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4. 4. 22.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4. 4. 30.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2004. 5. 12)에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가. 제안이유

- 2003년도 지방하수도 사업추진 지침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2004년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열악한 하수도재정에 가중되지 않도록 하수도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하수도사용료 요율 개정 (안 제13조 관련 별표1 개정)
 - 평균단가 : 108원 ⇒ 137원(26.8%) 수준으로 상향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시행령 제14조2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수질 기타 사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그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하수도 재정의 열악한 실정으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일반회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나,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위원 임형규)
 - 요금 인상은 찬성하나 영업용이나 목욕탕에서 지하수 사용이 많은데 하수도 요금은 적게 내고 있는 곳이 많은데 실태조사를 하여 요금 징수를 정확히 해서 세입도 늘리고 사용가의 평형을 맞게 할 수 있습니까?
- 답변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 5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하수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질의 (위원 박봉규)
 - 현재 체납액이 얼마이며, 징수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 답변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 3백만원 정도이며, 상수도와 병행하여 체납금 징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 토 론 요 지

○ 안기순 위원장

- 5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했지만, 그 때 인상하나 이번에 인상하나 똑같으므로 이번에 요금 인상하여 물사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6. 심 사 결 과

○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9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원안가결.